

Vivid X Cassiopeia Model United Nations Rules Of Procedure

한국어 위원회

1 장 규칙

1 조 언어

1. 제 1 회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 한국어 위원회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다.
2. 모든 회기에서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3. 해당 규칙을 지키지 않는 대사단은 의장단에게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지속적으로 해당 규칙을 어길 경우, 사무국의 판단 하에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조 전자 기기 사용

1. 대사단은 모든 회합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 가. 의장단의 허가
 - 나. 결의안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 회의
2. 해당 규칙을 지키지 않는 대사단은 의장단에게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지속적으로 해당 규칙을 어길 경우, 사무국의 판단 하에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조 성폭력

1. 제 1 회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은 대한민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재된 성폭력의 기준을 따른다.
2. 대한민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 행위는 성폭력으로 간주된다.
3. 성폭력이 사무국에게 보고되거나 포착될 경우 해당 가해자는 즉시 귀가 조치되며 대사단 자격 박탈, 수료증 발급이 취소된다. 또한 사무국은 가해자의 학교 또는 소속과 법적 보호자에게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4 조 관계

1. 제 1 회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의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상호간 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 대회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는 사적인 관계를 보여서는 안된다.

5 조 마약 및 음주

1. 대회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의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
2. 마약의 기준은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재된 내용을 따른다.
3. 의사에 의해 사전 처방되었거나 사무국이 제공한 의약품은 제외한 모든 약품 복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4. 규정에 어긋나는 마약의 소지 및 복용이 적발될 경우, 사무국은 법적 조치를 위해 공식적인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5. 주류의 소지 및 음주가 적발될 경우, 즉시 해당 참가자는 제 1 회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에서 퇴실 조치를 받게 되며, 사무국은 참가자의 학교 또는 소속과 법적 보호자에게 공식적인 보고서와 함께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6 조 흡연

1. 대회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의 흡연은 금지된다.
2.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류의 소지 및 흡연이 적발될 경우, 해당 참가자는 즉시 귀가조치 되며, 사무국은 참가자의 학교 또는 소속과 법적 보호자에게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7 조 복장

1. 제 1 회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의 공식 복장은 양식 정장과 교복이다.
2. 사무국 판단 하에 참가자의 복장이 규정에 어긋날 경우 사무국은 참가자의 대회 입장 및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8 조 표절 및 선행 작성

1. 제 1 회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은 문서의 표절을 엄격히 금지한다.
2. 문서를 표절한 대사단은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제 1 회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에서 결의안의 선행 작성은 장려된다.

9 조 출입

1. 제 1 회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의 모든 대사단은 소속된 위원회 실을 20 분 이상 떠나 있을 수 없다.
2. 사무국의 승인 하에 해당 시간은 조율될 수 있다.
3. 대사단이 사무국의 승인 없이 $\frac{2}{3}$ 이상의 회합에 결석할 경우, 수료증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2 장 대회 진행 규칙

1 조 의제

1. 각 위원회는 사무국과 의장단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의제로 회의를 진행한다.
2. 제 1 회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의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단일 의제로 진행되므로 의제 설정을 위한 발의는 생략된다.

2 조 출석 호명

1. 모든 회합은 출석 호명으로 시작된다.
2. 의장단은 대사단이 대표하는 국가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며, 호명된 대사단은 반드시 "참석하였습니다" 혹은 "참석하였으며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답변하여야 한다.
3. 출석 호명 이후 참석한 대사단은 사유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혹은 "참석하였으며 투표권을 행사합니다"의 문구를 의사전달용지에 적어 스태프를 통해 의장단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조 기조연설

1. 출석 호명이 종료된 후 의장단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2. 기조연설은 가나다 순으로 진행된다.
3. 호명된 대사는 연단으로 나와 90 초간 연설을 진행한다.
 - 가. 대사단은 기조연설에 주어진 90 초의 시간을 모두 활용하거나 의장단에게 잔여 시간을 양도하고 자리로 돌아가 착석할 수 있다.
 - 나. 기조연설 시 잔여시간은 타 대사에게 양도하거나 질의에 대한 사항을 받을 수 없다.
4. 모든 대사단은 필수적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해야 한다.

4 조 발언자 목록

1. 발언자 목록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회의 진행 시 열리는 발언자 목록과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제한된 발언자 목록이 있다.
2. 모든 발언자 목록에서의 최대 개인 당 발언 시간은 90 초이다.

3. 최대 개인당 발언 시간은 발언 시간 조정을 위한 발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
4. 의사진행규칙에서 최대 개인당 발언 시간이 지정된 제한된 발언자 목록의 발언 시간은 수정될 수 없다.
5. 발언이 종료된 후 대사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잔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가. 의장단에게 양도

나. 질의에 대한 사항

- ① 발언 잔여 시간이 10 초 이상일 경우 질의에 대한 사항을 받을 수 있다.
- ② 발언을 진행한 대사가 질의에 대한 사항을 받을 경우, 의장단은 해당 대사에게 받을 질의의 개수를 구체화할 것을 요청한다.
- ③ 모든 질의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잔여시간은 답변 중에만 소진되며 질의 시에는 소진되지 않는다.
- ⑤ 대사는 질의에 대해 연단에서 답변하거나, 추후 의사전달용지를 통해 답변할 수 있다.
- ⑥ 재질의는 의장단의 승인 하에 최대 2 번까지 가능하다.

다. 타 대사에게 양도

- ① 타 대사에게 양도는 발언 잔여 시간이 30 초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② 잔여 시간을 양도받은 대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잔여 시간의 재양도는 불가하다.
- ④ 발언자 목록에서 바로 다음 순서에 있는 대사에게 잔여 시간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 의사진행규칙에서 발언 시간이 지정된 제한된 발언자 목록에서 잔여 시간을 타 대사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

마. 추가적으로 발언자 목록에 등재되고자 하는 대사단은 의사전달용지를 통해 의장단에게 발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5 조 투표 절차

1. 투표 절차

가. 절차적 투표

- ① 절차적 투표는 발의와 같은 절차적 사항에 대한 투표이다.
- ② 대사단은 찬성 또는 반대 의사만 표명할 수 있으며, 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실질적 투표

- ① 실질적 투표는 결의안 혹은 수정안과 같은 실질적 사항에 대한 투표이다.
- ② 대사단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③ 출석 호명에서 "참석하였고 투표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답변한 대사는 실질적 투표에서 기권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

2. 호명 투표

가. 호명 투표는 의장단이 대사단이 대표하는 국가명을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여 진행되는 투표 절차이다.

나. 호명 투표는 의장단의 재량 하에 이루어지며, 정족수와 투표수가 맞지 않거나 대사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 진행된다.

3. 일반 다수와 절대 다수

가. 일반 다수

- ① 일반 다수는 정족수 $\frac{1}{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나. 절대 다수

- ① 절대 다수는 정족수 $\frac{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6 조 발의와 사항

1. 사사에 대한 사항

가. 대사단은 회의 도중에 개인적으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사에 대한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가청도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사에 대한 사항은 발언 도중에 제기될 수 없다.

다. 본 사항을 제기하는 대사단은 반드시 본인의 불편함을 구체화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절차에 대한 사항

가. 의장단이 의사진행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사단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본 사항은 대사단의 발언 도중에 제기될 수 없다.

3. 문의에 대한 사항

가. 대사단은 회의 도중 의사 진행 규칙, 대회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문의에 대한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본 사항은 타 대사가 발언하는 도중에 제기될 수 없다.

4. 규정 유예를 위한 발의

가. 의사진행규칙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규정 유예를 위한 발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본 발의는 발언 도중에 제기될 수 없다.

다. 대사단은 본 발의를 제기할 때 유예 대상 규정과 목적, 지속시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라. 본 발의에 대한 투표는 절차적 투표이며, 절대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마. 본 발의가 통과되면 의장단은 이를 사무국에게 보고하며, 사무국의 승인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휴회를 위한 발의

가. 휴회를 위한 발의는 회기 종료 20 분 전부터 제기될 수 있다.

나. 대사단은 본 발의를 제기할 때 목적과 회합 재개 시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다. 본 발의에 대한 투표는 절차적 투표이며, 절대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6. 폐회를 위한 발의

가. 폐회를 위한 발의는 회기 종료 30 분 전부터 제기될 수 있다.

나. 대사단은 본 발의를 제기할 때 목적과 회기 재개 시간을 구체화한다.

다. 본 발의에 대한 투표는 절차적 투표이며, 절대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7. 발언 시간 조정을 위한 발의

가. 발언자 목록에 주어진 시간을 수정해야 할 경우, 대사단은 발언 시간 조정을 위한 발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해당 발의를 제기한 대사는 목적과 조정할 발언 시간 그리고 지속시간을 구체화한다.

다. 본 발의에 대한 투표는 절차적 투표이며, 절대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라. 해당 발의가 통과된 후에도 의사진행규칙에서 지정된 제한된 발언자 목록의 발언 시간은 수정되지 않는다.

8. 공식 회의를 위한 발의

가. 공식 회의가 진행될 경우, 발언을 희망하는 대사단은 의장단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서 발언한다.

나. 해당 발의를 제기한 대사는 총 지속 시간과 개인당 발언 시간, 그리고 목적을 구체화한다.

① 지속시간은 최대 30 분으로 제한된다.

② 개인당 발언 시간과 지속시간 간에는 약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다. 본 발의에 대한 투표는 절차적 투표이며, 일반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라. 공식 회의에서의 발언 잔여 시간은 양도될 수 없으며, 대사단은 발언이 끝나면 의장단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착석한다.

9. 비공식 회의를 위한 발의

가. 비공식 회의에서는 모든 대사단이 자유롭게 회의장 내를 돌아다니며 의견을 나누거나 결의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연단에 나와 발언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해당 발의를 제기한 대사는 총 지속시간, 목적을 구체화한다.

① 비공식 회의의 총 지속시간은 최대 20 분으로 제한된다.

다. 본 발의에 대한 투표는 절차적 투표이며, 일반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0. 결의안 초안 소개를 위한 발의

가. 결의안 초안은 사무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결의안에 한해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소개될 수 있다.

나. 해당 발의가 제기될 경우, 의장단은 즉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다.

- ① 본 발의를 제기한 대사는 연단으로 나와 결의안의 효력 조항만을 낭독한다.
- ② 의장단의 지시 하에 해당 대사는 명료화에 대한 사항 2 개를 받는다.
- ③ 명료화에 대한 사항을 모두 받은 후, 의장단은 해당 대사에게 최대 5 분 간의 결의안 소개 연설 진행 여부를 묻는다.
- ④ 결의안 소개 연설이 진행된 후, 의장단의 진행 하에 해당 대사는 질의에 대한 사항 2 개를 받는다.

11. 수정안 소개를 위한 발의

가. 수정안은 사전에 의사전달용지를 통해 의장단에게 승인된 수정안에 한해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소개될 수 있다.

나. 해당 발의는 수정안의 발의국 대사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다. 해당 발의가 제기될 경우, 의장단은 즉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한다.

- ① 수정안 발의국은 연단으로 나와 수정안의 내용을 낭독한다.
- ② 수정안 낭독이 종료된 후, 의장단은 명료화에 대한 사항 2 개를 받는다. 단, 결의안의 특정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일 경우 명료화에 대한 사항은 받지 않는다.
- ③ 명료화에 대한 사항이 모두 소진된 후, 의장단은 반드시 수정안 발의국 대사에게 최대 3 분 간의 수정안 소개 연설 진행 여부를 묻는다.
- ④ 수정 소개 연설이 진행된 후, 의장단의 진행 하에 해당 대사는 질의에 대한 사항 2 개를 받는다.

라. 본 발의가 통과된 후에는 제한된 발언자 목록이 생성되며, 해당

수정안이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토의는 해당 토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지된다.

12. 토의 연기를 위한 발의

- 가. 토의 연기를 위한 발의는 대사단이 현재 결의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토의를 연기하고 다른 토의로 넘어가고자 할 때 제기될 수 있다.
- 나. 본 발의가 제기되면 의장단은 제한된 발언자 목록을 열어 본 발의에 대한 찬반 발언자 각각 두 명씩을 받는다. 이때 발언시간은 60 초로 제한된다.
- 다. 본 발의에 대한 투표는 절차적 투표이며, 절대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라. 본 발의가 통과되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결의안/수정안에 대한 토의는 토의 재개를 위한 발의가 제기되기 전까지 진행될 수 없다.

13. 토의 재개를 위한 발의

- 가. 토의 재개를 위한 발의는 앞서 토의 연기를 위한 발의에 의해 연기된 결의안 또는 수정안에 대해 대사단이 다시 토의하고자 할 때 제기될 수 있다.
- 나. 본 발의가 제기되면 의장단은 제한된 발언자 목록을 열어 본 발의에 대한 찬반 발언자 각각 두 명씩을 받는다. 이때 발언시간은 60 초로 제한된다.
- 다. 본 발의에 대한 투표는 절차적 투표이며, 일반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4. 토의 종료를 위한 발의

- 가. 토의 종료를 위한 발의는 대사단이 해당 결의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토의가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 제기될 수 있다.
- 나. 본 발의가 제기되면 의장단은 제한된 발언자 목록을 열어 본 발의에 대한 찬반 발언자 각각 두 명씩을 받는다. 이때 발언시간은 60 초로 제한된다.
- 다. 본 발의에 대한 투표는 절차적 투표이며, 절대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장 결의안과 수정안

1 조 결의안

1. 결의안은 회의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2. 통과되는 결의안의 개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3. 결의안의 형식은 사무국과 의장단이 사전에 결정한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결의안이 회의장에 2 개 이상 존재하기 위해서는 토의 연기를 위한 발의와 토의 재개를 위한 발의가 제기되어야 한다.
5. 결의안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서명국

- ① 서명국은 해당 결의안을 작성한 국가로 한정된다.
- ② 서명국의 최소 국가 수는 정족수의 $\frac{1}{3}$ 이상 이어야 한다.
- ③ 서명국과 후원국은 중복될 수 없다.

나. 후원국

- ① 후원국은 해당 결의안에 대해 토의할 의사가 있는 국가로 한정된다.
- ② 서명국의 최소 국가 수는 $\frac{1}{3}$ 이상, 또는 5 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서명국과 후원국은 중복될 수 없다.

다. 위원회 이름

라. 의제

마. 전문

- ① 전문은 결의안에 대해 효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실과 정보만 나열되어야 한다.
- ② 전문은 결의안이 소개된 후 수정될 수 없다.
- ③ 전문 조항의 개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 ④ 전문은 사무국이 지정한 단어로 시작되어야 한다.

바. 효력 조항

- ① 효력 조항은 의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안이다.
- ② 효력 조항은 하위 조항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 ③ 효력 조항은 수정안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
- ④ 효력 조항은 사무국이 지정한 단어로 시작되어야 한다.
- 6. 결의안 투표 절차는 실질적 투표이며, 절대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7.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 박수는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2 조 결의안 승인

- 1. 결의안 승인 여부는 의장교육국과 타 필요에 의한 사무국이 결정한다.
- 2. 결의안 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문법
 - 나. 타당성
 - 다. 가외성
 - 라. 서식

3 조 수정안

- 1. 수정안은 승인된 결의안에 대해 부분적인 삭제, 수정, 또는 내용 추가를 위해 제출된다.
- 2. 수정안은 반드시 결의안 초안 소개를 위한 발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개된 결의안에 한해서만 제출될 수 있다.
- 3. 수정안은 회의장에 한 번씩만 소개될 수 있으며, 수정안 토의 연기를 위한 발의 혹은 토의 재개를 위한 발의는 불가하다.
- 4.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가. 삭제: 삭제를 위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 ① 단어, 구, 혹은 조가 부적절할 때,
 - ② 해당 조의 타당성 혹은 가외성이 부족할 때,
 - ③ 해당 조가 대사단의 입장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 ④ 다른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 나. 수정: 수정을 위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 ① 단어, 구, 혹은 조가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다른 요소에 의해 대체될 때에,
 - ② 단어, 구, 혹은 조가 너무 광범위 할 때,

- ③ 다른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다. 추가: 추가를 위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 ① 해당 조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 ② 다른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 5. 수정안 투표 절차는 실질적 투표이며, 절대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6. 수정안이 투표에 의해 통과되면, 대사단은 해당 내용을 결의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 수정안 승인

- 1. 대사단은 반드시 수정안을 쪽지에 작성하여 의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한 개의 수정안에는 한 개의 내용만 수정 가능하다.
- 2. 의장단은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3. 의장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수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가. 해당 회합 혹은 회기의 잔여 시간
 - 나. 해당 결의안과의 적합성
 - 다. 해당 주제와의 타당성
 - 라. 시기와 내용의 적합성

5 장 발의와 사항의 우선 순위

1. 사사에 대한 사항
2. 문의에 대한 사항
3. 절차에 대한 사항
4. 규정 유예를 위한 발의
5. 휴회를 위한 발의
6. 폐회를 위한 발의
7. 발언 시간 조정을 위한 발의
8. 비공식 회의를 위한 발의
9. 공식 회의를 위한 발의
10. 결의안 초안 소개를 위한 발의
11. 수정안 소개를 위한 발의
12. 토의 연기를 위한 발의
13. 토의 재개를 위한 발의
14. 토의 종료를 위한 발의

1 장 안전보장이사회 조직

1 조 이사회

1. 상임이사국

가. 상임이사국은 유엔 설립에 큰 기여를 한 아래와 같은 국가를 칭한다.

- ① 러시아
- ② 미국
- ③ 영국
- ④ 중국
- ⑤ 프랑스

나. 상임이사국은 아래와 같은 권한을 지닌다.

- ① 실질적 투표에서의 거부권

2. 비상임이사국

가.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안전보장이사회의 10 개 국가를 칭한다.

2 장 의사진행규칙

1 조 투표

1. 조항 별 투표

가.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소개 시 각 조항 별로 소개 절차를 진행한다.

2. 거부권

가. 상임이사국은 실질적 투표 시 거부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즉시 해당 결의안은 투표 수에 상관없이 부결 처리된다.

2 조 발의

1. 상임이사국 회의를 위한 발의

가. 본 발의는 결의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실질적 투표를 진행할 때에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될 수 있다.

- 나. 본 발의는 상임이사국 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비상임이사국이 제기할 경우 자동 기각 처리된다.
- 다. 본 발의가 제기되었을 때에 의장단은 바로 해당 발의를 진행할 수 있다.